

대통령령 제 호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4제3호 중 “보여주는”을 “보여주는 경우, 평가에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평가자와 사전 접촉하는 경우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입학허가의 취소 적용례) 제42조의4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학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2조의4(입학허가의 취소) 법 제34조의6에서 “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	제42조의4(입학허가의 취소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<u>보여주는</u>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·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	3. ----- ----- ----- <u>보여주는 경우,</u> <u>평가에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평가자와 사전 접촉하는 경우</u> ----- ----- -----